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8 선고 2019나5989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

담당변호사 양동수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

변론 종결 2020. 11. 13.

판결 선고 2020. 12. 18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소1069061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, B에게 각 41,400,8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. 2.

16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들은 제1심에서 각14,900,883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은 부부이고, 피고는 원고 A의 모이며, 망 D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은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인데, 망인은 2015. 11. 27. 처인 피고, 자녀들인 E, F, G, 원고 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.

나.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H 토지 및 지상 5층 빌딩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과 대지 중 1/2 지분(나머지 1/2 지분은 원고 A의 소유이다)과 서울 강남구 I 대 393.8㎡, J 대 358.4㎡, 서울 서초구 K 대 302.4㎡ 및 그 지상 건물, 남양주시 L 임야 18,744㎡, 서울 강북구 M 임야 6,678㎡, 파주시 N 임야 55,636㎡, 0전 7,465㎡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 등이 있었다.

다.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, 원고 A, E, F, G 명의로 2016. 1. 20. 상속재산분할협의서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서'라고 한다)가 작성되었는데, 이에 따르면 위 K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고,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1/2지분을 비롯한 나머지 부동산은 E, F, G와 원고 A이 각 1/4의 비율로 상속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. 위 분할협의서에 따라 2016. 1. 20. 및 2016. 1. 21.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위 각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대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한편 원고 A, B은 2016. 3. 28. '망인은 2009. 4. 10. 원고 A,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1/2 지분을 유증한다'는 취지로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P 증서 2009년 제37호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유언공정증서'라고 한다)에 기하여, 이미 E, F, G와 원고 A 명의로 각 1/8 지분씩 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중 1/2지분을 위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A, B 앞으로 그 절반인 1/4 지분씩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마. E, F, G은 이 법원 2016가단5171800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. 2. 14. '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고, 그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, 원고들은 위 E, F, G이 이 사건 건물 중 상속재산분할로 받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3/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'는 위 E 등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,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19. 11. 7. 이 법원 2019나17538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,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2020. 11. 12. 대법원 2020다223170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6호증, 을 제1 내지 4, 15, 16, 2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주장 및 판단

### 가. 원고들의 주장

- 1)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수취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망인의 사망 후인 2015. 12. 21.부터 2016. 2. 15.까지 약 2개월 간 이 사건 건물 1층 Q점포의 임차인인 R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12,388,493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임의로 이체 받고, 2015. 12. 1.부터 2016. 1. 29.까지 이 사건 건물 S호 임차인으로부터 3개월 임대료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횡령하였으므로, 이 사건 건물의 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- 2)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5. 11. 30. 망인의 사업자 통장에서 임의로 12,000,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, 2016. 12. 16. 위 통장을 해지하며 5,413,273원을 출금하는 등 공금 합계 17,413,273원을 횡령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- 3)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.경 및 2009.경 이 사건 건물 2층 법률사무소 및 T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5,0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한 뒤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### 나. 판단

- 1) 먼저, 이 사건 건물 1층 Q 점포의 차임 12,388,493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,

피고가 2015. 12. 21.부터 2016. 2. 15.까지 Q 점포의 차임 12,388,493원을 수령한 사실, 2015. 12. 1.부터 2016. 1. 29.까지 S호의 차임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부터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수령을 포함한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, 피고가 2015. 1.경부터 2016. 1. 25.경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4,111,020원을 납부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망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6,670,050원을 납부되는 한편,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와 부가세 등 명목으로 합계 70,714,790원을 송금한 사실, 망인이 2015. 11. 27. 사망한 뒤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2016. 1. 20. 후에도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E, F, G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관리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, 위 무렵까지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방법을 변경할 것을 피고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차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적법하게 위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차임을 초과하는 세금 및 관리비 등을 지출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다음으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사업자 계좌에서 인출한 17,413,273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, 먼저 피고가 2015. 11. 30. 망인의 계좌에서 12,000,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을 제18,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U병원에 장례비 14,865,280원이 발생하였고, 피고의 사위 V 명의의 롯데카드로 위 장례비가 결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12,000,000원을 인출하여 장례비 명목으로 위 V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출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(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출금액 외에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5. 11. 30. "국민49제천도제1)"라고 기재되어 18,500,000원, 같은 날 "국민장례비용"으로 기재되어 16,442,000원이 각 제3자에게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

통상 병원 장례식 비용 외에 발인 후 장지까지 별도의 장례비용이 발생하는 점, 위 각 이체금액이 병원 장례비로 지출되거나 송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),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또한 2016. 12. 16. 망인의 남서울 농협의 계좌가 해지되고 잔액인 5,413,273원이 출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을 제19,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망한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는 사실, 망인의 남서울 농협의 계좌 해지 및 잔액 출금 당시 위 은행의 출금 신청서에는 원고 A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아닌 신분증 사본만이 복사되어 첨부된 사실, 원고 A은 위 출금과 관련하여 E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E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좌 해지 및 출금된 5,413,273원은 원고 A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위 예금 잔액을 출금한 것으로 보이고,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.

3) 나아가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,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25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. 12.경 및 2009. 9.경 각 작성된 이 사건 건물 2층 법률사무소 및 T호의 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(계좌번호: W)로 입금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8.12. 30. 법무사 X으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법률사무소의 임차보증금 3,000만원 중 1/2에 해당하는 1,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 외에 위 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을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. 10. 26. 위 법률사무소의 보증금 14,940,827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철, 판사 이수진, 판사 박동복

1) 49재의 오타로 보인다.